라벨위원회 고시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인버터 라벨 관리 대상 상품 지정

현재 태양광 제품은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여러 기기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그중 인버터 제품은 태양광 패널에서 얻은 직류 전기를 전기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류 전기로 변환하는 데 필수적인 기기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받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인버터를 라벨 관리 대상 상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불기 2541년(서기 1998년) 소비자보호법(제2호)으로 개정된 불기 2522년(서기 1979년) 소비자보호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라벨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1조. 본 고시에서,

"인버터"란 태양광 패널 또는 배터리의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변환하여 전기기기에 사용하거나 배전계통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변환장치(PCS)를 말한다.

제2조.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인버터를 라벨 관리 대상 상품으로 지정한다.

제3조. 제2조에 따른 라벨 관리 대상 상품의 라벨에는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문구, 도형, 도안 또는 그림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구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해당 상품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해서는 안 되며, 태국어 또는 외국어와 병기한 태국어로 표시하여 도형, 도안 또는 그림의 의미를 설명하고 명확하게 보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라야 한다.

제1항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되어 태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라벨 관리 대상 상품의 라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라벨 관리 대상 상품의 라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상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한 상품의 유형 또는 종류의 명칭

(2) 태국 내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의 명칭 또는 태국에 등록된 상표

(3) 판매를 목적으로 왕국 내로 주문하거나 수입하는 자의 명칭 또는 태국에 등록된 상표

(4) 수입 상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

(5)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왕국 내로 주문하거나 수입하는 자의 소재지

(6) 밀리미터 단위의 크기 또는 치수 및 킬로그램 단위의 상품 질량. 사용하는 단위는 정식 명칭, 약칭 또는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7) 인버터의 종류. 예를 들면 온그리드 인버터(On-Grid Inverter), 오프그리드

인버터(Off-Grid Inverter), 하이브리드 인버터(Hybrid Inverter)가 있다.

(8) 정격 교류 출력(Rated AC Output Power). 사용하는 단위는 정식 명칭, 약칭 또는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9) 최대 입력 전압(Max Input Voltage). 사용하는 단위는 정식 명칭, 약칭 또는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10) 공칭 교류 전압(Nominal AC Voltage). 사용하는 단위는 정식 명칭, 약칭 또는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11) 최대 입력 전류(Max Input Current). 사용하는 단위는 정식 명칭, 약칭 또는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12) 최대 교류 출력 전류(Max AC Output Current). 사용하는 단위는 정식 명칭, 약칭 또는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13) 최대 변환효율(Max Efficiency)

(14) 소비자가 사용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방법. 예를 들면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변환하는 데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15)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 또는 보관상의 권고사항. 예를 들면 사용 기간에 따라 기기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조자의 설명서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하며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건조하고 청결하며 부식성 물질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고 동물이나 곤충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16) 경고 또는 주의사항. 예를 들면 상품을 개조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태양광 패널과 교류 전기 계통에서 전압이 발생할 수 있다, 단자에 접촉해서는 안 되며 접촉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설치와 유지 보수는 숙련된 자가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문구는 다른 글자보다 큰 글자를 사용하고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문구와 구별되어 명확하게 보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17) 제조 연월일. 다만, 명확한 제조일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 연도와 주차 또는 제조 연월만 표시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상품의 품질 또는 특성에 따른 효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8) 유효기한 연월일 또는 권장 사용기한 연월일. 이는 사용수명이 있는 상품인 경우에만 표시하며, 해당 상품의 품질 또는 특성에 따른 효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9) 가격. 단위는 바트로 표시하며, 다른 통화 단위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17) 및 (18)의 문구는 일, 월, 연도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은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으며, 연도는 불기 또는 서기로 표시할 수 있다. 일, 월, 연도를 순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표시방법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 또는 문자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상품 라벨의 문구는 명확하게 보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사용하는 글자의 크기는 라벨 면적에 상응하여야 하며, 글자의 높이는 2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라벨 관리 대상 상품의 라벨을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일한 위치에 모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상품 자체에 모든 사항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구, 도형, 도안 또는 그림 중 어느 하나를 상품, 용기 또는 포장의 어느 한 부분에 표시하거나, 상품, 용기 또는 포장에 삽입하거나 함께 넣거나, 상품에 부속하여 사용하는 문서 또는 사용설명서에 표시하거나, 상품, 용기 또는 포장에 설치하거나 표시한 표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위치에 표시한 라벨을 합하였을 때 명확하게 보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일: 불기 2569년(서기 2026년) 9월 14일

론나롱 푼피팟

라벨위원회 위원장